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 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이율을 인하하고,
- 나. 연대보증인 조건 완화와 용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원활히 도모코자 함
- 다. 조례 조문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므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3. 주요골자

- 가. 대출 신청자들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 동일한 금리로 조정(현행 : 5% → 개정 : 3%) (안 제5조제2항)
- 나.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보증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증인 완화 (현행 : 2인 → 개정 : 1인) (안 제6조제2항)
- 다. 상환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자금상환기간을 1년 연장 (현행 : 2년 → 개정 : 3년) (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
  - (주민소득지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생활안정기금) 2년 거치 24개월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건은

-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출 신청자에 대한 금리와 상환기간, 보증인확보등 용자절차와 조건을 타구와 형평에 맞게 완화조정함은
-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수혜범위 확대로 자활의지제고와 자립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산광역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 개선건의 사항과 부합되므로 본조례 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2003년 10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